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재혁 의원 (대표) 발의)

| | |
|----------|-----|
| 의안 번호 | 521 |
|----------|-----|

발의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발 의 자 : 송재혁 의원 (1명)

찬 성 자 : 이병도, 임종국, 박상구,
고병국, 송아량, 오현정,
문장길, 김광수, 김제리,
이현찬, 이은주, 한기영,
이동현, 김호평, 이세열,
채유미 의원 (16명)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동 단위의 지역 사회보장 증진과 공동체 회복 및 주민 자치 증진 등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정의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안 제3조)

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안 제6조)

다. 사업의 범위,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 단위의 지역 사회보장 증진과 공동체 회복 및 주민자치 역량강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이라 한다)란 동 단위 지역사회 안에서 민과 관이 함께 수행하는 활동 체계를 말한다.
2. “지역의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보장을 동 단위 지역사회 중심으로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주민 자치”란 주민이 지역의제의 발의, 공론, 실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체계를 말한다.
4. “마을 공동체”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찾동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찾동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내부의 부서 간에 협력하고 민과 관이 연계하는 통합적 운영체계를 지향한다.
2. 찾동은 인권에 기반 한 직무태도를 견지하며, 지역중심·수요자중심의 관점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3. 찾동은 지역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공공의 책무성을 최우선으로 전제하며 그에 필요한 적정 인력의 투입 등 공공 인프라 확충 및 공적 지원체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찾동에서 주민은 지역의 공공의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동 단위 협치의 주체로서 권리가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찾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및 지원
2.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3. 시·구·동간 또는 민·관간 긴밀한 소통협력을 위한 논의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4. 그 외 찾동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기본 계획 등) ① 시장은 찾동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지원하기 위하여 찾동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 단위로 수립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2. 운영 및 지원체계
3. 주요 성과기준 및 연차별 목표
4. 자원의 확보 및 배분
5. 그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찾동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찾동 정책의 주요 현안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찾동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찾동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서울특별시 찾동 관련(행정, 혁신, 여성, 복지, 건강) 실본부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행정, 주민자치, 여성, 복지, 건강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서울특별시 자치구 부구청장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서울특별시 의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찾동 정책의 심의·자문이 필요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나, 품위손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사업의 범위) ① 찾동 사업은 지역의 사회보장증진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목표로 복지·건강·여성·마을·자치·행정 등의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부서 간에 협력한다.

②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빈곤·소외·위기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편적 복지·돌봄·건강 정책의 추진과 복지 안전망을 위한 주민들의 활동 사업 등을 지원한다.

③ 공동체 복원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마을 공동체 활동, 골목단위의 주민 공론장 조성, 서울형 주민자치회 전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한다.

제8조(비용의 지원) ① 주민 참여 및 주민자치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동의 협력자로 위촉할 경우, 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과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자치구의 찾동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